

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10. 4. 15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3. 25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서실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 향상 및 독서실 운영·관리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청소년독서실 이용시간을 08:00~23:00으로 함(안 제5조제1항)
-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제2항)

-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되 독서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격주 휴관하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
- 저소득가정의 청소년, 유공자 가정의 청소년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■ 관련법규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성동구, 중구, 용산구, 광진구, 금천구, 마포구 등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는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시,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.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에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법 제18조에서는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”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,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4. 15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청소년기본법

- 제18조 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■ 지방자치법

- 제144조 (공공시설)**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-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